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4. 8. 26.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77호로 2024년 8월 12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행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촉이 어려운 경우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 당원 등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윤리자문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7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 현행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이에 규정을 정비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72조의2제2항에서 제72조의2제6항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비 및 신설
- 안 제72조의5는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신설

○ 검토결과

- 안 제72조의2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를 인용하여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시 예외적으로 허용된 참여를 배제하여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72조의5제2항은 기존 제척·회피 사항의 조문에 기피 사항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정성을 강화함.
- 한편,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서대문구가 본 일부개정규칙안과 가장 유사함.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서울시 자치구 조례 및 규칙 제정 현황

	자치구	조례명
1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참고 자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0.27.>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1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35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제37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8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5. 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3 서울특별시 서대문의회 회의규칙

제7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윤리특별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3.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대체한다.